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

장영진

현재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부방식은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는 2024년 기준 약 7% 정도 비율로 이루어졌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와 카드사 간 자율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 현행 보험료 납부방식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 현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고²⁾, 계좌이체, 현금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대하여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Nega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상품은 결제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가맹점 계약 내용 및 형태 역시 가맹점과 카드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³⁾.

- 1)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 2)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 6. 8.

생명·손해보험 전체 납입보험료 중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비율을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6.8%가 카드납부로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0.5%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표1]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비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카드납(비율)	현금납(비율)	카드납(비율)	현금납(비율)	카드납(비율)	현금납(비율)
2021	30,132	2.95	248,276	23	278,406	13
2022	31,467	3.12	266,212	22	297,679	13.2
2023	33,388	3.57	85,676	10	119,065	7.38
2024 상반기	18,416	4.27	37,519	9.57	55,935	6.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보험료 수납형태기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이와 같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 2% 대의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관련하여 보험소비자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 등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카드납부를 확대 내지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왔다.

[표2]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내용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0187 (2024.6.7.)	보험회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195조의2)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103862 (2020.9.14.)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4184 (2018.7.3.)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3조의2 신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해외입법 동향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는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이 신용카드 규제를 분리하여 명시한 법률이 부재하다⁵⁾.

미국의 경우 소비자신용 보호법인 「Regulation Z」에 신용카드 수납강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뉴욕주 보험업법에서도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본의 경우 일본 보험업법 및 하위법령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영국은 보험영업행위준칙(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ICOB)에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규정

이 없다.

위 주요국들은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관한 법적인 제재 조항이 없다.

일본은 보험사의 카드 결제 거부시 카드회사가 가맹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대형 생보사들은 보험료 신용카드납을 하지 않고 있고,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⁶⁾.

해외 입법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와 카드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율결정에 맡기고 있다.

3 관련 쟁점

(1)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진 보험상품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⁷⁾에 따르면, ①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②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금, 적금 및 부금 등 금융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고 있다.

보험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상품 중 위험보험료와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 상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4) 생명보험협회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2024년 1분기 기준,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의 신용카드 납부 가능 상품은 0건이고, 삼성생명의 경우 일부 상품이 삼성카드로만 결제 가능함

5) 보험연구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에 대한 논의”, 2010. 4. 19.

6) 보험연구원,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방안”, 2008. 10. 13.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제1항

금지하는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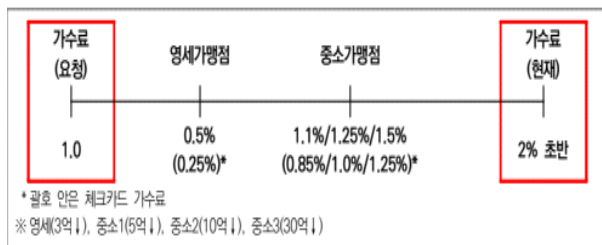
예를 들어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 시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인데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시 예·적금과 동일하게 외상 저축에 따른 차익거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카드납부 의무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⁹⁾,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2) 보험사의 수수료 부담 문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대인데¹⁰⁾,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이 3%대인 것을 감안할 때 2%대의 가맹점수수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¹¹⁾.

[표3] 보험사의 가맹점수수료 현황



자료: 여신금융협회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보험업계는 가맹점수수료가 1%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험료의 카

드결제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1% 대 가맹점수수료는 수수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자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¹²⁾.

현재 금융위원회가 정한 카드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있고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원가 이하로는 가맹점수수료 책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적격비용 및 경쟁제한 요인 확인을 통해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¹³⁾, 인건비,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비용 감소 요인이 크지 않고 경쟁제한 요인도 적어 현실적으로 보험사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확대 및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수수료의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3)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 및 형평성 문제

보험업계의 수수료 증가는 원가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부담 전가의 정도는 보험상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인바, 보험 수요는 어느 정도 비탄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 부분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보험혜택의 축소, 보험료 인상 등 어떠한 형태로든 보험소비자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체결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부 소비자들로 인하여 인상된 보험료 부담은 현금납부자를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하게 분산되어

8)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안내, 2024. 6. 28. 기준

9) 손해보험협회 제공, 2024. 6. 27.

10) 계좌이체(자동이체) 수수료의 경우 건당 150원에 불과함

11) 한국보험신문, "보험설계사 카드수납 두고 20년째 씨름", 2023. 3. 20.

12) 한국보험신문,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카드사 눈치 봐야 하나?" 2022. 6. 20.

13) 생명보험협회 제공, 2023. 5. 4.

형평성 관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참고로,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한 납세의무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¹⁴⁾, 이는 부담 전가 및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로 납입할 현금을 카드대금 결제일 이전까지 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현금납부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결제의 편의성 측면

카드업계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비자의 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금의 유동성 측면 등에서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카드납부 의무화시 카드대금 결제기한까지 보험료의 기간이자 비용만큼을 절약할 수 있지만, 단기부채 회피 성향 등으로 카드 납부를 선호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의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료의 카드납부는 당장 현금납부는 회피할 수 있지만, 한두 달 내 결제기한 도래시 카드대금 결제 의무가 있어 회피 효과는 단기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간편결제 시스템의 확산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납부가 용이해져 일일이 카드정보를 통지해주어야 하는 카드납부 방식보다 더 편리한

측면도 있다.

일반 제품을 할부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카드수납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 계속분에 대한 승인 요청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 등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험설계사가 해촉되거나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였을 때 카드수납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5) 거시경제에의 영향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단기부채의 증가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결론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는 1)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적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 2)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3)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4) 결제 편의 제공의 효과가 불분명한 점, 5) 납부방식을 자율에 맡기는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보험사와 카드사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상 거래 대상이 아닌 용역(예컨대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결제 등)의 카드납부 제한을 법률로 금지하여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정책 판단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동 이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14) 국민연금법제90조의3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의2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2제3항 (납부대행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